국·공립대학교 교권보호 준칙

제정 2026.09.18.

전문

대학은 진리 탐구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대학 교권은 특정 직역의 권익이나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교원이 교육과 연구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학문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전승, 학생지도 및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적 기반이다. 따라서 대학 교권의 보호는 개별 교원의 권익을 넘어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유지하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최근 대학에서는 폭행, 협박, 스토킹, 온라인 명예훼손, 연구실 무단침입, 반복적·악의적 민원, 연구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성적평가 또는 연구결과 변경 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과 대학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권 보호 제도는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학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뿐 아니라 연구와 사회봉사, 학문적 표현의 자유, 공정한 학사 운영, 학생지도, 산학협력 및 대학자치 등 초·중등교육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학 교권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연구활동과 학생지도, 성적평가, 학문적 의사표현 및 대학 운영 참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국·공립대학교는 대학 교원의 교육과 연구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교권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이 「국·공립대학교 교권보호 준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대학 교원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 학문의 자유 및 대학자치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권의 개념과 범위, 대학과 구성원의 책무, 교권침해의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철학 및 이념) 대학 교권의 보호는 교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대학자치 및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으로 한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 교권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기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2.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인권 및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대학은 예방 중심의 교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교권 보호는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 비밀보장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겸임·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그 밖에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 대학은 교원의 고용형태, 소속, 직급 또는 재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권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 교권

제4조(교권의 정의) 대학 교권이란 교원이 헌법과 법률, 학칙 및 학문적 전문성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학사평가, 학술활동 및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권한을 말한다. 대학 교권은 교원의 특권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적 권리이자 전문적 권한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5조(교권의 범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과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권리
2. 학문적 견해와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할 권리
3. 공정한 성적평가와 학사운영을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행할 권리
4. 학생지도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행할 권리
5. 대학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
6.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7. 교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보호·지원·회복조치를 받을 권리

제3장 교권침해

제6조(교권침해의 정의) 교권침해란 학생, 교직원, 대학기관, 외부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당한 압력·간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 학생지도, 학사평가, 학술활동 또는 대학 운영 참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교육과 연구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적법한 성적 이의신청,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정당한 민원 제기, 학문적 논쟁 및 적법한 감사·인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교권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침해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행 또는 협박
2.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3. 온라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또는 개인정보 무단 공개
4. 연구실·교수실 무단출입, 시설 점거 또는 출입 방해
5. 수업, 시험, 논문지도, 연구수행 또는 학술활동의 방해
6. 반복적·악의적인 민원 또는 보복성 문제제기
7. 강의자료·연구자료의 무단 촬영·복제·유출·파손
8. 성적평가, 학사처리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부당한 변경 압력
9. 그 밖에 교육·연구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제4장 대학의 책무

제8조(대학의 책무) 대학은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권 보호가 선언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전담체계, 예산, 절차 및 지원 수단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은 교권 보호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대학자치,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이 함께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권보호체계 구축)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심의기구의 설치·운영
2. 교권보호 규정, 세부지침 및 표준서식의 마련
3. 대표 신고창구와 교권보호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지정·운영
4.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과 초기 위험도 평가체계의 운영
5. 피해교원 심리·의료·법률·행정 지원체계의 구축
6. 예방교육,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 체계의 운영
7.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관리 기준의 마련

제10조(교권침해 예방) 대학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원, 학생, 직원 및 관리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2. 신입 구성원 대상 교권과 학습권의 경계 및 절차 안내
3. 정기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제도 개선 권고
4. 상담창구 운영과 초기 갈등 조정 지원
5. 디지털 공간에서의 비방, 무단 촬영·배포 등 신유형 침해 예방조치
6. 반복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장 피해교원 보호

제11조(보호원칙)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피해교원의 안전과 교육·연구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대학은 교권침해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객관적인 위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 분리, 연락·접촉 제한, 대체강의 지원, 출입 제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 등 필요한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상담, 진술, 자료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피해교원에게 재임용, 승진,

강의배정, 연구지원, 보직 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 대학은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회복지원
2. 의료지원 및 안전조치
3. 법률상담, 법률대리 또는 소송지원
4. 근무조정, 대체강의 및 업무경감
5. 연구 및 강의 지속을 위한 행정지원
6. 사건 종결 후 복귀지원과 사후 모니터링

제6장 학생 및 교육공동체

제13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받으며, 동시에 교원의 교육과 연구, 다른 구성원의 인권과 대학 질서를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의 합리적인 비판과 학사절차에 따른 문제제기는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은 이를 교권침해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적 회복) 대학은 교권침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교원의 회복과 보호를 우선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의 교육적 성찰, 공동체 회복 및 재발방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폭행, 협박, 스토킹,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나 권력 불균형이 현저한 사안에서는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 또는 관계 회복 절차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제도 운영

제15조(교권보호위원회) 대학은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기구와 연계하되 기능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교권침해 여부, 긴급 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교원 보호 및 회복지원, 재발방지 대책, 필요한 징계 또는 후속 조치 권고를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는 교원, 법률 전문가, 상담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 및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학생 참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응 매뉴얼) 대학은 교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대응 매뉴얼에는 상담 및 신고 접수, 초기 위험도 평가, 긴급 보호조치, 사실조사,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이의신청, 기록관리, 비밀유지, 사례관리 및 사후점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대학은 신고자와 피해교원의 신원 및 사건 관련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하고, 처리 지연이나 보복·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함께 두어야 한다.

제17조(준칙의 운영) 대학은 본 준칙을 기준으로 대학의 실정에 맞는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대학은 본 준칙의 취지에 따라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통

계와 사례를 비식별 처리하여 예방교육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은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 공동 지원체계, 외부전문가 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준칙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제정했으며,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대학별 교권보호 규정과 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대학은 시행 후 운영상 미비점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다.